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[별표 4의4] <개정 2016. 7. 19.>

##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(제8조의2 관련)

| 위반행위 | 영업정지 1개월 | 영업정지 3개월 |
|---|---|---|
|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| 2천만원 | 5천만원 |